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  
제7차기획재정위원회

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■ 김동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4043호)

2024. 11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정은

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주요 내용별 검토 .....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항목에 기숙사비 포함(김동아의원안) ... | 2 |



## I. 개요

### 1.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4043호)

#### 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김동아의원 등 12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9. 13.
- (3) 회 부 일 : 2024. 9. 19.

#### 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.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,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## II. 주요 내용별 검토

### 1.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항목에 기숙사비 포함(김동아의원안)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동아의원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특별세액공제(제59조의4제3항)<br><br>○ 공제항목: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</u><br><br>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:<br>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·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, 급식비, 교과서대금, 교복구입비용,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, 현장체험학습비,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<br><br>○ 세액공제율: 15%<br><br>○ 공제한도<br>①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:<br>- 취학 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: 연 <u>300만원/명</u><br>- 대학생: 연 <u>900만원/명</u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항목에 기숙사비 포함<br><br>○ 공제항목: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<u>수업료, 급식비 및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</u><br><br>○ (현행과 같음)<br><br>○ 공제한도<br>①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:<br>- 취학 전 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: 연 <u>400만원/명</u><br>- 대학생: 연 <u>1,000만원/명</u> |

\* 김동아의원안 2024. 9. 13. 제출(의안번호 4043)

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추가로 ‘기숙사비’를 포함시키고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숙사비 등 지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.

□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,

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, 초·중·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, 평생교육시설,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,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.

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<sup>1)</sup>에서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에 따른 공제항목은 수업료·입학

1) 「소득세법」

**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**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
**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**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.

1.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·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
2. 「학교급식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)에 지급한 급식비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
4.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,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)
5.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(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)
 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  - 라.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)
6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(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)
7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

금·보육비용·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, 급식비, 교과서대금, 교복구입비용,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, 현장체험학습비,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등이 있음.

- 개정안은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항목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추가로 기숙사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숙사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서,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첫째, 등록금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.

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4년 전국 대학의 기숙사비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, 2인실 월 평균 기숙사비는 약 24만원 수준, 4인실의 경우 약 21만원 수준으로 조사됨.

#### [2024년 대학 기숙사 유형별 한 달 평균 기숙사비 현황]

(단위 : 원)

| 구분     | 1인실     | 2인실     | 3인실     | 4인실 이상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직영     | 314,424 | 219,056 | 195,863 | 185,609 |
| 민자     | 338,920 | 234,704 | 219,508 | 222,246 |
| 행복기숙사* | 274,735 | 265,542 | 250,439 | 229,238 |
| 평균     | 309,360 | 239,767 | 221,937 | 212,364 |

\*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교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공공기금 용자 및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설립된 형태의 기숙사  
자료: 한국사학진흥재단

둘째,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,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일부 예시를 들어 위임함으로써 국민이 예측가능하도록 함이 법률유보원칙에 보다 부합하

는 측면이 있음.

□ 다만,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학교 기숙사비는 인근의 원룸, 하숙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,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으나 공급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숙사에 대하여만 세제지원하는 것은 여타의 형태로 거주 중인 대학생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161 |